

뉴질랜드 휴대품 통관정보

2010 년 7 월 현재

휴대품	통관기준
술	· 와인 4.5리터 또는 맥주 4.5리터 · 기타 주류 3병(한 병당 1,125ml 이하 용량)
담배	· 궤련(Cigarette) 200개비, 250g의 타바코(tobacco) 또는 시가(Cigar) 50개비 ※위의 세 품목을 합한 총량이 250g 미만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총 반입물품 NZ\$700 이하 · 여행 중 사용할 유모차, 망원경, 계산기, 휴대폰, 간단한 악기, 휴대용 컴퓨터, 라디오, 운동기구, 비디오 카메라, 헬체어 등의 물품은 여행 후 출국시에 다시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관세 없이 반입 가능
외국환신고	· NZ\$10,000 또는 그 상당의 외국환
의약품	·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하며, 원래의 포장용기에 담겨있어야 하고, 3개월 이내 사용분량에 국한됨. 단 마약계통 의약품은 1개월 이내 사용분량에 국한됨
식품	· 다음품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확한 신고를 한 경우는 NZ\$200 벌금을 즉석에서 과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NZ\$100,000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모든 종류의 음식물, 식물, 생물 견본 - 동물, 가축 또는 동물성 제품 - 동물 또는 가축에 사용되었던 용품 - 캠핑장비, 골프클럽, 사용한 적이 있는 자전거
반입불허품목	· 무기, 음란물, 야생동식물, 불법약품, 마약, 대마초 용품
기타유의사항	· 신고여부가 불확실한 물품은 자진 신고 요망 · NZ\$1,000 이상의 상업목적 물품은 신고하여야 함

뉴질랜드 식품 통관 정보

뉴질랜드는 국외로부터 동식물에 포함된 각종 해충·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항·항구에서 엄격한 식품위생 안전검역을 실시하는 바, 재외국민 일반의 입국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식품 관련 통관정보를 제공함.

- 「국립식물검역소(MAF)」협조를 통해 '10.5 월 작성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수시 변경되므로 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외국민 일반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목적인바,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료·자문 제공은 영사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정송자료로의 활용도 부적합함을 고지함.

□ 신고 방법

- 뉴질랜드 입국시「입국 신고서(Passenger Arrival Card)」상에 안내된 식품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입국 신고서에 기재· 신고(또는 자진 폐기) ※ 붙임: 입국 신고서 국·영문본 각 참조
 - 신고 여부가 모호하거나 소량이라도 음식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
 -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X-ray 투시기 및 MAF 탐지 건 등에 의해 검사

- 식품에 신고 관련 의문이 있는 경우「뉴질랜드 국립식물검역소(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이하 MAF)」검역관(Quarantine inspector)에 사전 문의
 - 전화: 0800-00-83-33 ※ 옵션 3(동식물 수입관련 문의) 선택 후, 동물제품은 #1, 식물제품은 #2 를 선택
 - ※ 한국어 안내 또는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이메일: enquiry@maf.govt.nz
 - 홈페이지: <http://www.biosecurity.govt.nz/enter/declare>
- 입국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뉴질랜드 이민성, 법무부, 국세청, 통계청, 사회복지부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유될 수 있으므로 성실 신고 필요

□ 처벌 내용

- 식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주의라도 과태료 **400 뉴질랜드 달러** 즉석 부과
 - '10.4.22 부터 기존 200 불에서 400 불로 증가
- 대부분 벌금 부과사유는 과실, 태만에 의한 미신고인 경우이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최대 10 만 뉴질랜드 달러 또는 5 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도 가능**

□ 신고에 따른 처리 유형

1. 검역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주인에게 반환
2. 방문자의 경우, 세관에서 보관 후 뉴질랜드 출국시 반환
 - 항공기로 입국 후, 여객선을 이용하여 출국시 등은 제외
 - 부패할 수 있는 물품(perishable item)은 보관 불가
 - 보관료는 선불, 月 20 뉴불, 한달 5 뉴불 추가 : 2 개월 보관시 \$20+\$5=\$25
 - 보관기간 제한은 없으나 보관기간이 지난 이후 찾아가지 않으면 28 일 이내 폐기
 - 보관장소는 오클랜드공항 1 층 입국장 출구를 바라보고 좌측(렌트카회사 부스)에 위치, 반드시 출국전에만 반환 가능하며,「식품위생안전당국의 승인 증명서(Biosecurity Authority Clearance Certificate, BACC)」지참 필요
3. 희망시 방역 처리 후 주인에게 반납(경우에 따라 방역 불가 가능성)
 - 모든 방역비용은 본인 부담, '10.5 월 현재 방역비용은 1 건당 25 뉴불
 - 처리기간은 업무일 5 일 이내, 수령 방법은 방역소와 상의하여 직접. 우편.대리 수령 가능, 수령시 '승인 증명서(BACC)' 지참 필요
4. 희망시 국제 등기우편으로 반송 가능
 - 쉽게 상하는 음식류, 반입 금지 품목 제외
 - 본인 부담, 물품의 무게, 부피에 따라 다르나 평균 100 뉴불 소요
5.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폐기 처분: 땅속 매장, 소각 등

□ 신고, 검사 후 반입 가능한 식품군

- 수시 변경되므로 아래 해당 링크 참조 필요
- 반입 가능 식품군이라 하더라도 **검역관 판단재량에 따라** 병.해충의 위험 방지 차원에서 현장에서 반입 불가 조치 가능함을 참고

<식물류>

○ 반입 가능 품목

- 식물류 식품은 조리(굽기, 건조, 절임)된 경우 대부분 반입 가능
- 상세 내용 아래 링크 참조
 - ※ <http://www.biosecurity.govt.nz/imports/plants/standards/bnz-npp-human.htm> 내 8.9 항목의 입국 요건(ENTRY CONDITIONS) 참조

- 구체적 예
- 양념류 및 장류: 고추가루, 고추장, 된장, 간장 등
- 소 김치류: 단, **숙성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 불가
- 소 짬자지류: 단, **숙성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 불가
- 마른 해초류: 김, 파래, 미역 등 (염장미역줄거리도 가능)
- 말린 나물류: 단, 상업용 포장 및 영문라벨(수기 기재 가능) 필수
- 말린 과일류: 단, 씨가 없는 것만 가능
- 각종 차종류: 녹차, 울무차 등
- 미숫가루, 볶은 콩, 빵 및 떡류
- ※ 상업용 또는 진공포장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나 말린 나물류는 상업용 포장필수

○ 반입 불가 품목

- 생 야채류(도라지, 더덕, 인삼 등)
- 생 과일(일부 반입도 불가)류: '열매 파리(Fruit Fly)'의 위험성 등 이유
- 꿀로 절인 생강, 인삼 등: 2% 이상 꿀 함유 제품의 뉴질랜드 내 꿀벌에 대한 치명적 병균 전파 가능성 사유 (한국뿐 아니라 호주에서 입국시에도 모두 불가)
- 숙성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짬자지, 김치류: 생 야채류와 같이 식물 관련 병균 수발 가능성
- 옥수수 알갱이(팝콘 용도 등), 검정콩 등 씹이 틀 수 있는 씨앗류
 - * 단, 종이팩에 버터와 같은 포장된 전자레인지용 팝콘류는 반입 가능
 - * 집에서 키우기 위한 씨앗류의 경우 학명 (Scientific name: 예- 오이 Cucumber - Cucumis Sativus)이 표시된 상업용 포장에 담긴 경우, 뉴질랜드 농림부에 등록, 허가된 종자에 한해 반입 가능
- 포푸리(pot pourri : 방향용 향료, 말린과일 또는 꽃잎 등의 혼합물)

<생선류>

○ 반입 가능 품목

- 바다 생선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가 표기된 상업용 라벨 부착이 되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죽은 생선에 한해 가능**
- 상세 내용 아래 링크 참조

※ <http://www.biosecurity.govt.nz/imports/animals/standards/fismaric.all.htm> 內 6. 적격성(ELIGIBILITY) 참조

- 구체적 예
- 젓갈류(새우, 멸치, 황새기, 조개, 오징어, 명란, 창란, 게장 등)
- 건어물류(멸치, 오징어, 쥐포, 북어 등)
- 자반 생선류(자반고등어, 조기, 굴비 등)
- 민물 및 바다 조개류: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건조, 냉장, 냉동 모두 가능, 단 **전복 제외**
- 민물 및 바다 갑각류(게, 가재, 새우 등) :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 가능
- 바다 성게류 및 해삼류: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 가능

○ 반입 불가 품목

- 모든 민물 생선류: 바다+민물 생선의 경우는 민물생선으로 취급하며 조리 및 포장방법과는 관계없이 **절대 불가**
- 특히 **뱅어(White Bait/Ice Fish)**는 민물생선으로 취급하여 반입 불가
- 미더덕: Pest 로 분류되어 반입 절대 불가
- 전복 (단, 열소독(Heat treated-55°C 에서 10 분 이상)이 되었다는 제조 업자 발행 증빙서류 소지시 반입가능)

<육류>

- 육류(한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는 절대불가하며, 육류가 포함된 품목의 경우 대부분 반입 불가
- 캔에 들어간 뼈를 제한 육류제품의 경우 반입 가능 (캔장조림, 스팸 등)
- 기타 순대, 육포, 삼계탕 진공팩 등은 포장방법(진공, 레토르트 등) 및 조리방법(건조, 냉장 및 냉동)에 관계없이 반입 불가.
- 조류(닭고기 등)는 포장 및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절대 불가**
- 상세 내용 다음 링크 참조 <http://www.biosecurity.govt.nz/files/ihs/ediproic.all.pdf>

<낙농 제품>

- 냉장 및 냉동을 요하는 모든 낙농제품은 대부분 반입불가
- 상업용 포장인 된 요거트 및 멸균 진공포장된 우유에 한해 가능

<과자류> 우유, 계란, 소고기 원료가 함유된 과자 포함

- 상온 보존(Shelf stable)이 가능한 모든 과자류는 반입 가능
- 소고기 원료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스프류 또는 라면 등은 상업용 포장인 뜯겨지지 않은 상온 보존 가능제품에 한해 허가
- 상세 내용 아래 링크 참조 <http://www.biosecurity.govt.nz/files/ihs/ediproic.all.pdf>

<레토르트(retort) 포장된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류>

-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반입 가능(과일, 야채, 개소주, 흑염소 등)
- 단, 십전대보탕 등 한약(Chinese Medicine)팩, 한약환 등은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첨가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농림부, 세관 및 환경 보존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반입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음을 참고
- ※ 내용물에 대한 영문 조성표가 있는 경우 유리

<집에서 빚은 술>

- 과일 및 야채주의 경우 대부분 허용, 蛇酒(뱀술) 등 **동물성 술 절대 불가**
- 단, 술에 든 과일 또는 야채가 숙성 안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불가

□ 한국 식품 주요 거부사례

- 기내에서 먹고 남은 사과조각을 가방에 넣은 후 실수로 未신고
- 주의 태만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 즉석에서 과태료 400 뉴질랜드 달러 부과
- 숙성 안 된 마늘 짬아지 및 파김치 반입 불가
- 최소 일주일 이상 숙성 필요. 숙성이 덜 된 것 내지 날 것처럼 판단될 경우 담근 기일에 관계없이 검역관 판단재량으로 반입 거부 조치 가능
- 집에서 만든 꿀에 잼 인삼(도라지, 유자차) 반입 불가
- 꿀이 아닌 **설탕에 잼 것은 가능하나** 집에서 만들어 꿀이 2%이상 함유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 불가하여 반입 거부**
- 2% 이상 꿀 함유시 수입 허가증(Permit to Import) 필요
- 스낵용 소세지(돼지고기 함유) 반입 불가
- 어육 100%의 경우 가능하나 돼지고기가 일부라도 함유시 불가
- 신선부부가 폐백때 받은 밤 반입, 반입거부
- 검정콩(서리태), 생밤 등 씨앗류 반입 불가

□ 식품 통관 관련 제언

- 제한 식품을 반입하는 경우 소량이라도 반드시 신고, 신고여부가 모호할 경우 반드시 신고
- 부주의로 식품 소지한 경우에도 未신고시 예외 없이 벌금 부과됨에 주의
- 반입 거부 결정 후 본인 희망시 방역 후 반환 가능성이 있는 바, 본인에게 소중한 식품인 경우 방역 요청 고려
- 집에서 만든 음식도 반입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가능한 영문 라벨 및 식품조성표가 있는 상업용 포장 식품이 반입에 유리
- 한국어 라벨도 검역관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 음식물 반입 허가 여부 결정 관련 검역관의 판단재량이 상당하며, 결정 번복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폐기가 원칙임을 참고
- 반입 제한 식품 종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해당 사이트 등을 참조하시고 개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

뉴질랜드 의약품 통관 정보

- 재외국민 일반의 입국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의약품 통관정보를 제공코자 함.
 - 「뉴질랜드 의약품안전청(Medsafe)」협조를 통해 '10.5 월 작성하였으며, 관련 내용이 수시 변경되므로 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외국민 일반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목적인바,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료·자문 제공은 영사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정송자료로의 활용도 부적합함을 고지함.
- ※ 기타 개인별 상세 내용은 Medsafe에 직접 문의 요망

□ 의약품 통관 개요

- 뉴질랜드로 반입할 **모든 의약품**은 본인 및 가정 구성원(immediate family)의 사용에 국한되며, 다른 사람 복용 및 판매 목적 반입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 필요
- 지난 2009 년 한 해 동안 Medsafe 가 조사한 의약품 건수는 총 20,182 건으로 이중 약 7.2%(1,471 건)가 한국으로부터 반입

□ 신고 대상, 방법

- 신고 대상으로는 의약품(Medicines; 일반, 처방, 제한, 약국 전용 및 마약류)뿐 아니라, 목캔디(throat lozenges), 미백 치약, 허브 치료제(herbal remedies) 및 의료기구(붕대, 심장 판막 등) 등 치료 목적이 있는 모든 품목 해당
- 우편 송부시에도 의약품 또는 의약품 추정시 Medsafe 에서 **고지없이 조사 가능**
- 승인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뉴질랜드 보건부 산하 의약품안전청(Medsafe)에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오클랜드 Medsafe 사무소>
 - 전화: 64-9-580-9141(한국어 안내 및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팩스: 64-9-580 9240
 - Email: medclearance@moh.govt.nz 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biosecurity.govt.nz/enter/declare>
- ※ 여타 사무소 안내는 하기 링크 참조 <http://www.medsafe.govt.nz/other/contact.asp>

□ 처리 유형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 통상 허브 의약품(herbal medicines), 식품 보충제(dietary supplements) 및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품(over-the-counter medicine) 등
- 조사 후 즉시 주인에게 반환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 상기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이외 일체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의사의 영문 처방전을 소지하고 영문라벨이 붙은 원래의 포장용기(original containers)에 약품이 담긴 경우 3 개월 미만분(내복 피임약은 6 개월분)에 한해 가능
- 그러나 상기 조건을 충족했다라도
 - **본인 직접 반입시:** 상황에 따라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음.
 - **우편 반입시:** 반드시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 또는 편지를 제시해야 함.

<마약성분이 함유된 '규제 의약품(controlled drug)' 반입>

-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s)을 포함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methadone, 몰핀 및 pethidine 등)의 경우 최대 1 개월 분에 한해 반입 가능
 - ※ methadone: 합성 마취제이며 의학적으로 진통제나 기침약으로 사용(네이버 백과사전)
- **우편 송부 절대 불가**하며, 본인이 소지하여 입국한 경우에만 허용
- 상기 처방 의약품과 같이 의사의 영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원래 의약품 용기에 영문라벨이 붙어있는 경우만 반입 가능
- 반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경우에 따라 **처벌(기소)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상기와 같이 반입조건 모두 충족했으나, 한국어 라벨이 붙은 경우

- 해당 라벨은 반드시 원래 용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수기로 적은 라벨도 인정, 단 해당 의약품의 브랜드명과 원료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입국시 약품을 직접 소지한 경우:** 한국어 라벨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고 마약류가 아닌 경우 반입 가능, 경우에 따라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 요구할 수 있음.
- **우편 반입시:** 서면 번역문(번역공증 불요) 및 뉴질랜드 의사 처방전 제시 필요

○ 원래 용기 아닌 다른 용기에 담겨 있으며 성분 라벨이 없는 경우

- 의약품의 원료가 식별 불가하므로 공익의 안전을 위해 폐기
- 단, 의사 처방전이 있고 및 수기로 기재한 라벨이라도 영문 브랜드명 및 모든 원료가 적힌 경우
통관 직원의 판단재량에 따라 반입 가능

○ 3개월 분 이상의 복용량을 가져온 경우

- 입국시 약품을 직접 소지한 경우: 모든 반입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통상 당사자가 3개월 미만의 분량을 직접 분리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 잔량은 반송 또는 통관원의 지시에 따름.
- 우편 송부시: 반입 조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전량 반송**, 뉴질랜드에서는 인가 받은 약국(licensed pharmacy) 이외에는 의약품 유통 불가

□ 반입 허가가 보류된 의약품(의약품 추정 물품 포함) 반환 절차

1. 뉴질랜드 입국시, 통관허가가 보류된 모든 의약품(의약품 추정 물품 포함)은 Medsafe의 조사팀(Medsafe Investigation Team)에서 관리
2. 필요 조건 충족시 24시간 내 본인에게 우편 배송, **직접 방문 수령 불가**
3. 전화 문의시 세관에서 받은 편지 왼쪽 상단에 있는 참조번호(Ref, 통상 IMC로 시작) 및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남기실 것

※ 문의처: 상기 오클랜드 Medsafe 사무소 참조

□ 반입 거부 사례

- 한국 약국에서 조제한 작은 봉투에 여러 개의 알약이 혼합된 처방 의약품을 소지하였으나, 해당 의약품 성분에 대한 라벨이 붙어있지 않아 반입 거부
- 주로 코 감기약, 어린이용 기침 감기약 등에 Pseudoephedrine (뉴질랜드에서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규제 의약품으로 구분)이 함유되어 반입 거부
- 한약성분 제품 (Chinese herbal products: 원문인용)에 일부 성분명시가 안 된 처방의약품이 함유되어 반입 거부
 - 이런 경우 불량 약품(Adulterated Medicines)으로 규정하여 폐기 처분
- ※ 예시: Sibutramine 이 함유된 체중 감량제 또는 Sildenafil 이 함유된 성기능 장애치료제 (products to help with sexual dysfunction) 등

□ 의약품 통관 관련 제언

- 의약품 반입시 반드시 영문처방전과 더불어 원래 용기에 영문라벨 부착 필요
 - 약국 조제로 여러 알약이 하나의 봉투에 있는 경우 의사의 영문처방전, 각 알약별 브랜드명 및 성분이 모두 표시된 영문라벨 부착시 통관에 유리
- 한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더라도 뉴질랜드에서는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불확실한 경우 상기 Medsafe 에 사전 문의하실 것.
 - 뉴질랜드에서는 일부 허브 의약품이나 허브 식품보충제(herbal medicine or supplement)의 경우 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됨에 주의
- ※ 예시: 멜라토닌(Melatonin), DHEA 및 최음제(Yohimbine) 함유 제품 등
- 우편 송부시 3개월 분을 초과한 경우 **전량 반송됨**을 유념.